

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관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주 소(법인소재지)	전화번호	자택 휴대폰	
신청내용	적성검사기관명			
	적성검사기관 소재지			
	검사가능 항목 []운전적성검사 []관제적성검사 []운전업무종사자 등의 적성검사			
	검사기기 종별 (모델번호 표시)			
	적성검사 예정 연월일			

「철도안전법」 제15조제4항 · 제21조의6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·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운영계획서 2.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(법인 그 밖의 단체만 해당합니다) 3.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학력·경력·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운전적성검사시설 또는 관제적성검사시설 내역서 5. 운전적성검사장비 또는 관제적성검사장비 내역서 6.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